

배포 2025. 9. 8.(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5. 9. 9.(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면) 2025. 9. 9.(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 가능
- 대학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 구체화
-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
-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는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①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신설('25.9.19. 시행)에 따라 온라인 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 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 ※ (온라인학교)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사립학교에서 부모(교사)와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③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첫째,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대학교원자격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으로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

둘째,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1.12.9. 시행)에 따라, 채용 비위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셋째,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체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넷째,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사의 경우에도 모성 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④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교육감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 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5.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책임자	과 장	정상명 (044-203-6715)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도균 (044-203-6719)
담당 부서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훈희 (044-203-6480)
		담당자	장학관	강경탁 (044-203-6489)
		담당자	교육연구관	이윤호 (044-203-6487)
담당 부서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4-203-6830)
		담당자	서기관	이호형 (044-203-6839)
		담당자	사무관	최윤정 (044-203-6938)
담당 부서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책임자	과 장	이종원 (044-203-6500)
		담당자	사무관	이예지 (044-203-6507)
담당 부서	학생건강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비 기준) ①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敎授)·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 교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교지(校地: 교사용 대지를 말한다)
2.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공하는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등의 운영을 위한 방송·통신 장비, 서버 등 시설·설비
3. 과목별 교수·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校具)
4.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학교 규칙) 온라인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명칭

2. 학기 및 휴업일

3. 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4. 교과(敎科), 평가·시험 및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5. 수강학생(온라인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6. 수강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요청,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온라인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수강학생의 온라인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7. 학칙 개정 절차

8. 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제4조(수강 대상)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초·중등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수강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①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는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과목

2. 그 밖에 온라인학교의 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의 기준·절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목 개설의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학기) 온라인학교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다.

제8조(휴업일) ① 온라인학교의 휴업일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수업운영방법) ① 온라인학교의 수업은 쌍방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다만, 온라인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이 다른 수강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시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출결상황: 수강학생의 과목별 출결상황
 2. 교과학습 발달상황: 수강학생의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기록을 해당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을 관리·보존해야 한다.
-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온라인학교의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학점 인정)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

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위원(온라인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선출 방법, 임기 및 자격 상실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온라인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온라인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온라인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되는 온라인학교의 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7. 온라인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시·도의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수강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강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회의 소집의 일정·방법 및 의
견 수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
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
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심의 결과의 시행 등)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제18조(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①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이 원활하게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의 출결 확인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 상호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직원 배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
2. 제3조에 따른 학칙
3.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시행 및 시정명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을 “법 제60조의

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를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60조의5제1항”을 “법 제60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을 “법 제60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을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04조의7 본문 중 “법 제60조의10제2항”을 “법 제6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2항”을 “법 제60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1항”을 “법 제60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7제4항”을 “법 제60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제2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0조의8”을 “법 제60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법 제60조의10”을 “법 제60조의11”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2. (생략) 3. <u>당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u> ③ (생략)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u>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u>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u> 첨부하게 할 수 있다. <u><신 설></u>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 ----- ----- -----. ----- --- <u>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u> 추가로 -. 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① <u>사립학교(「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연구, 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라.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
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파
견기간: 3년 이내. 다만, 특히 필
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항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 1
년 6개월 이내. 다만, 특히 필요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교원
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
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신 설>

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임용권자 소속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파견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4조의5 ~ 제24조의8 (생략)

제24조의8 ~ 제24조의11 (현행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8까지와 같음)

제24조의9(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징계의

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
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의8,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
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분다.

② (생 략)

제24조의10 · 제24조의11 (생 략)

----- 제24조의1
1, 제24조의13 및 제24조의14를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13 · 제24조의14 (현행 제24
조의10 및 제24조의11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 ④ (생략)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u>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u> 공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u><신설></u>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일간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u> 공고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5(서류 등의 검증)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단계와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요건 및 검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u>법 제11조의3</u> 에 따른 대학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u>법 제11조의4</u> -----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1조의5제3항 후단에 따
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
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
의 범위) 법 제11조의5에서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 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근무 경력 등 대학의
장이 대학의 교원 임용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1조의6제2항-----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의6제3항 후단-----

④ 법 제11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⑤ ~ ⑧ (생략)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 10.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8조(준용규정) ① (생략)

<신설>

④ 법 제11조의6제5항 전단-----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3(파견근무)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공무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신 설>

② (생 략)

<신 설>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 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 ⑧ (생략)

⑨ 임용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를 그 사람이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⑥ 심의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본문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

<신 설>

<신 설>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 4. (생략)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 ~ ⑥ (생략)

<신 설>

관에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 설>

<신 설>

<신 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0일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8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를 심사한 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법 제29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2.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u>제22조의2 · 제22조의3</u> (생략)	<u>인정하는 사항</u> <u>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u> <u>제22조의3 · 제22조의4</u> (현행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과 같음)
-----------------------------	---